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9084 제출연월일 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·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의2).

법률 제 호
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그 밖에 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2(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	제30조의2(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
설치 등) ① (생 략)	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	②
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8. 그 밖에 시・군 또는 자치구
	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